

대법원 2023도588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이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하고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그 조형물을 손괴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회사명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위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위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5885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 환경활동가인 피고인들은 2021. 2. 18. 11:5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A 회사의 베트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회사명 조형물(가로 350cm, 세로 60cm, 이하 '이 사건 조형물')에 녹색 수성스프레이 4개를 뿌린 후 이 사건 조형물 위에 올라가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침
- 이로써 피고인들은 옥외집회를 주최하면서 집회의 목적 등을 적은 신

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고, 이 사건 조형물을 금액 불상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함

2. 소송경과

▣ 제1심 ➡ 유죄

- 피고인 1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200만 원

▣ 원심 ➡ 항소기각

● 집시법 위반 부분

-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

● 재물손괴 부분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
-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 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원심판결 파기·환송

다. 판단 내용(직권 판단)

- ▣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이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

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0474 판결 등 참조). 구조물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가 구조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해당 구조물 등의 용도와 기능, 낙서 행위가 구조물 등의 본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 구조물 등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구조물 등의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낙서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조형물 손괴 여부 ➡ 부정

-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 내용, 이에 따른 이 사건 조형물의 용도와 기능 및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그 시간적 계속성,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이 사건 조형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과 저항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형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형물의 금속재질 문자 부분에 물로 세척이 용이한 수성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미리 준비한 물과 스펀지로 이 사건 조형물을 세척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형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나 기능에 제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일부 스프레이가 잔존한 부분은 이 사건 조형물 중 문자 부분을 지지하는 대리석 부분 중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되는데, 대리석의 재질이 수성스프레이가 분사되면 물로 세척이 곤란한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위 대리석 부분은 야외에 설치되어 비, 바람, 오수와 오물 등에 노출된 상태여서 자연스럽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이 사건 조형물의 주된 용도와 기능 또는 미관에 손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괴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해당 부분과 관련한 원상회복의 난이도나 비용에 대한 별다른 증명도 없음
- 피고인들은 기후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

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하는 행위를 하였고,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 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¹⁾

- 피고인들 행위의 시간적 계속성, 이 사건 조형물 전체의 미관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형물의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의 수성스프레이 분사 행위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기업의 광고라는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함

■ 결론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재물손괴 부분과 집시법 위반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함

1) A 회사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조형물 교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23. 5. 3. 제1심에서 A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음